



+입법정보

세종의회인식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2020

통권 제25호



지방의회 의정평가 전국 3위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상점가 지정
현주소는?

제60회 임사회 개회사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의지를 담은 동주공제(同舟共濟)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딛고
세종시의 이상향인
행정수도 완성에 함께
도달하자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60회 임시회 회기에서 논의되는 주요업무 계획들이 올
한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열정을 잃지 않
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의지를 담은 동주공
제(同舟共濟)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딛고 세종시의 이상향
인 행정수도 완성에 함께 도달하자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
는 절실함과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공을 이룰 수 있다는 신
념으로 행정수도와 관련된 현안에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의회는 새해에 크게 세 가지 현안에 주목하고 집행
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첫째,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
성화시켜야 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조치원 전통시장이 열린 지 250주년인 되는
해입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을 기점으로 주변 상권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합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특색을 잘 살려서 주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시켜 나간다면, 문화관광도시 측면에
서 세종시의 위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 용도제한 완화
등 검토가 필요하고, 작년 햇빛축제와 달빛축제의 사례처
럼 지역 상가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대안 마련을 위
해 지혜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삼
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과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 고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야만 진정한 시민주권자치의 가치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균형 있는 성장과 분배를 통해 도시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과 지역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정책적으로 스마트도시로 육성되는 세종시에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에게 일
부 혜택을 주되, 지역 인재 의무채용 등 기업 이윤에 대한
지역 환원 대책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과 문화체육
시설 확충,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등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시의 성장과 발전이 세종시민 모
두에게 환영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우리가 사는 근원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
세종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
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C O N T E N T S

세종시의회소식 통권 제25호

- 04 **의정 포커스**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의정평가 전국 3위, 제60회 & 제61회 임시회 성과 정리
- 08 **인터뷰**
손현옥 의원
임채성 의원
- 12 **의정뉴스**
코로나19 대응 > 민생경제 긴급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 제61회 임시회 연기 및 단축 운영 외
- 19 **의원소식**
- 23 **5분 자유발언**



- 29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38 **연구모임**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 40 **의원 생각함**

- 43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인포그래픽**
- 48 **포토에세이**
- 49 **입법정보**
- 74 **독자투고**
- 76 **세종시 주요 통계**
- 78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80 **2020년 2분기 회기 안내
 & 의회 운영 채널 소개**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의정평가 '전국 3위'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1인당 발언수와 입법활동 부문 3위 기록
불출석 사유 기록 공개와 관리로 투명한 의회 운영도 주목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최근 발표된 지방의회 의정 활동 평가 보고서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의회정치를 성실히 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등 19개 전국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 연대가 3월 17일 발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에 따르

면, 세종시의회는 제3대 의회 출범 이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1인당 발언은 3.89건으로 3위, 1인당 입법활동은 3.50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전국 지방의회 243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1인당 통계는 조사 기간 내 지방의회별 시정질문 및 5분발언 건수(발언 건수)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건수(입법활동 건수)를 각각 합산

한 후, 이를 의원 정수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참여자자치지역운동연대는 총평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이라며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이며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의 경우 시민들의 언로(言路)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세종시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지방의회에 포함되는 등 투명한 의회 운영과 전국 평균(4.3건)을 넘어선 건의·결의문 발표 수(7건)로도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제3대 세종시의회에 대한 대내외 신임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제3대 의회 출범 당시 ‘일 잘하는 의회’라는 가치를 내걸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결과가 통계치에 그대로 반영돼 보람을 느낀다”며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정활동의 의미를 되새겨서 앞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6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 특별·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 계	309	950	3.06

☑ 특별·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세종시의회는 지금

코로나19로 2가지 키워드에 역점 '방역'과 '민생경제 살리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종시의회 제61회 임시회가 5일로 단축 운영되는 등 유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긴급대책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경제 침체에 대비해 세종시의회는 '방역'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올해 열린 제60회 임시회부터 제61회 임시회까지 세종시의회의 의정 성과를 정리했다.

방역태세 완비와 민생경제 살리기 공조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원활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61회 임시회 연기와 회기 축소 운영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담당 부서장의 본회의 불출석 제안과 청사 방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종시의회는 방역 태세 완비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상반기 의정 목표로 내세웠다. 실제로 지난 3월 26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시정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 긴급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당초 이날 발표된 긴급대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50만원 지원을 골자로 했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결정된 이후 세종시는 중복 지원과 예산 문제의 이유로 자체 지원사업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세



중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정부 지원으로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시의 지원보다 확대된 만큼 시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후속 대책에 지지의 뜻을 표한다”며 “다만, 이번 지원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원 자금의 조속한 선순환과 추가적인 민생경제 지원책 마련에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노력

지난 3월 30일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수특위)는 시민단체(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 행정수도 공약 수립과 이행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총선 공약이 다음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부터 본격적인 입법활동의 기준이 되는 만큼, 행수특위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에 반드시 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행수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근거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대효과를 주요한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한 행수특위는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시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가결하고 상병헌, 안찬영, 이태환, 차성호, 박성수 의원 5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학 캠퍼스 유치는 자족적 교육 기능 강화는 물론,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는 이점을 안고 있는 만큼, 세종시 내 대학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대학캠퍼스 유치 특위 구성을 통해 지지부진한 캠퍼스 유치 상황을 타개하고 나아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에 나가겠다는 포부다.

‘도농상생’ ‘공공체육시설’ 연구모임 발족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세종시의회 연구모임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새롭게 재편했다. 현재까지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과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은 유철규 대표 의원을 필두로 안찬영 의원과 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체육회 등 관계 공무원과 연구원 등 7명이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운영방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세종시의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격차 해소는 물론,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차성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현 의원과 이윤희 의원, 유인호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청년 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7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대와 경쟁력 있는 6차 산업 발굴 등 상생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5월부터 제62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정례회 회기 조정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회의와 모임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길 기대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올해 첫 정례회를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되는 만큼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들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의정 동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

손현옥 의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입법기관이다. 이는 많은 지방의회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다.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의 핵심 지표로 삼고, 지난 2년간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왔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손 의원을 만났다.

Q 새해 들어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했는지?

조선의원으로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 예·결산 심의 등을 하면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해 왔다. 올해는 2년간 의정 경험 덕분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그렇지만 항상 초심을 생각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하려고 한다.

Q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

세종시의회는 기초와 광역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와 시 전체를 아우르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지역구의 작은 민원도 챙겨야 하고 세종시가 나아갈 방향, 정체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뿐 아니라 균형감 있는 의정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를 잘 대변하기 위해 집행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

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입장을 늘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Q 세종시의 당면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과제는?

우선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종식과 그 이후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확충된 인프라 시설 못지않게 세종시가 가진 도시의 특색을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본다. 앞으로 세종시 특유의 문화, 공동체 의식, 여가, 청소년 문화, 교육 시스템 등을 정비해나가는 일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교육은 세종시 발전의 주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형 인재상을 키우는 교육의 기틀을 잡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기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교육특별자치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서비스와 각종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Q 지난 의정활동 중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가락마을 6·7단지 분양전환과 가락마을 19단지 하자 및 입주지원 민원에 대해 수 개월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최선책을 이끌어 냈다. 고운동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도 있다. 우리시 첫 실외놀이터 시범사업으로 고운동공원 숲속 쉼터에 '모두의 놀이터'가 선정되었고, BRT 보조노선 시범운행이 결정된 것이다. 또한 환경과 교통 민·관 협의체를 통해 고운동의 환경·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교육 분야로는 지난해 고입배정 오류의 여파가 1생활권 고등학교 정원 배정에도 영향을 끼쳐 1생활권 고교 정원 평준화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고, 가락마을 1·2단지, 반곡동 등 불합리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개선하기 위해 통학차량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해 '청소년 정책 활성화 연구모임'의 대표위원을 맡아 모임을 이끌었다. 1년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초청강연,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시 청소년 정책에 적용할 정책을 찾아보고,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Q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후반기에 위원회가 변경되어도 교육과 안전은 시민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후

반기 원 구성이 되면 지역구에서 챙기지 못했던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대중교통, 체육시설, 단독주택지 관리, 아트 빌리지,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문제가 있는 현장은 더 많이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도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Q 현재 제·개정을 준비 중인 조례안이 있다면.

지난 3월 61회 임시회에서 '장애인권 및 공감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숙한 통합과 공동생활에 대한 방법을 체득하며 더불어 사는 공감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학생을 위한 조례를 계속 제·개정하려고 한다. 학생들의 문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난독, 난청 등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직 하지 못한 일도 있고 계속 관심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도 많은 상황이다. 남은 2년여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께서 원하는 고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우리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절반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시민의 의견은 잘 반영했는지 반추해 보겠다. 지금까지 다져온 시간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

Q 임기 내 세종시민들을 위해 꼭 변화를 이끌고 싶은 분야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문시답, 정책제안,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있지만 아직도 소통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나온다. 높은 수준의 인재들이 있지만 제대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는 아직 미흡해 보인다. 적극적인 인적 자원 발굴로 다양한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세종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세종시가 표방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다.



시민의 눈높이로, 정직한 자세로

임채성 의원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정직만큼 풍요로운 유산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당리당락과 여론 등에 의해 실 시간으로 정치 역학의 썩음이 달라지는 현대정치에서도 ‘정직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여전히 정치활동에 든든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임채성 의원은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다.

Q 새해 들어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생각대로 의정활동을 하자’는 각오를 늘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와 교육청에 전달하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따져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뛰는 만큼 시민의 삶이 편해진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정치철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정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시민들께 늘 정직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에 있어서도 정직한 눈으로 보면 문제가 보이고 그 해결책도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뭉가를 속이고 숨기려 하는 것은 결국 모두 알게 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는 결국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그 과정이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참여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제3대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의회에 들어와서 아름고 사태, 무상교복, 고입배정 오류 등 각종 현안이 많다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동료 초선 의원님들도 많았지만 모두 열심히 해보자는 분위기였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잘 살피기 위해 공부도 그만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회의 준비와 조례 제정 등을 위해 밤늦게까지 서류와 씨름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Q 세종시의 당면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과제는?

지난 1월부터 계속 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시민,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 교통문제, 재정문제 등 당면현안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안은 청소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시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6만명에 가까운데 이는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합니다. 이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앞으로 우리시를 이끌어갈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을 창의적이고 바른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 세종시 청소년들만큼은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키워 대한민국 중심 세종시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 등을 제정하여 뒷받침 하고자 했습니다.

Q 지난 의정활동 중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우선 지역구 주민들께서 말씀해주신 불편, 민원사항을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재마을 4단지 버스정류장까지 통행로를 설치하고 가재마을 11단지 앞 회전교차로의 경우 도로구조상 좌회전 차선이나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려워 가재마을 7단지과 12단지 앞에 유턴차선을 신설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노력 중이지만 연양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는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 분야와 청소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체육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올해 2월 충남대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체육인 출신으로서 학

교 운동부를 신설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지원조례 등을 발의했습니다. 학생 건강문제에 대해 '학생 비만예방 교육 활성화 조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 등도 제정했습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해 2020년 교육청 예산에 6억여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분야의 경우 여러 발언을 통해 청소년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학업중단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활동을 위해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개방시간이 연장됐고, 교육청에서 2022년 공립 대안교육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법적 근거 마련에도 앞장섰습니다.

Q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제 3개월 정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일을 하면 7월경에는 후반기 원 구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안전위에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도 있고 의원이 되어 처음으로 활동한 위원회라 아쉬움도 남지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도 여러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5월에 열리는 제62회 정례회에서는 추경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아직도 남은 일이 많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감은 지난 2년간의 교육안전위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것이어서 더 힘을 쏟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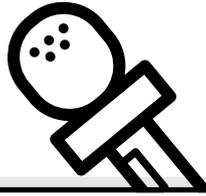
Q 현재 제·개정을 준비 중인 조례안이 있다면.

얼마 전 끝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교 신설 공사 등에서 부실시공을 미리 방지하려고 발의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학부모, 학생 등이 공사현장 감독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추가하려고 했으나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담지 못했습니다. 제 62회 정례회 때는 그 부분을 담아 조례 제·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 주체가 감독에 참여하여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의회로 보내주신 만큼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시민이 원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께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깊이 새기고 있으므로 어떤 의견이든 편하게 전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EJONG CITY COUNCIL
NEWS
 세종의정 소식



· 코로나19 대응 ·

세종시의회,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해 민생경제 살리기 나선다

3월 26일 시정 브리핑서 민생경제 긴급대책에 대한 의회 입장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3월 2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종시의 두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회기 운영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금택 의장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공동으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 브리핑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지역 민생경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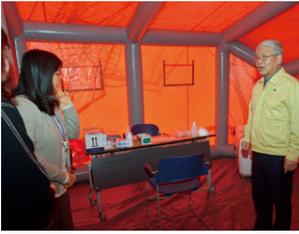
서 의장은 “저소득층 3만 3천여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생계비와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지원이 될 것”이

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추가 대책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긴급지원자금 확보는 물론, 필요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3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1회 임시회를 폐회한 세종시의회는 이번 지원 자금의 조속한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서 의장은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서 하루 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대응 ·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현황 점검

2월 3일 긴급현황보고 및 대책회의 주재... 빈틈 없는 감염 예방활동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2월 3일 시청 보건복지국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책 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보건복지국장과 보건소장 등으로부터 국내외 확진자 상황과 관내 동향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 의장은 “관내 음압시설이 없어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천안 단대병원으로 확진자가 이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격리 조치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격리병상 확보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장은 집행부에 “손세정제 사용을 생활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누로 자주 손을 씻어서 손에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예방수칙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서 의장은 관내 보건소에 설치된 음압 텐트에 방문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세종시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역사와 간호공무원 등 4인 1조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서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없도록 사전 방역과 격리병상 운영 등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지역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염 바이러스 유입 차단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의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

세종시의회,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방역 확대 등 감염 확산 방지책 논의

2월 25일 시 관계부서 추진 현황 보고 청취...지역 내 감염 예방에 총력 기울이기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월 25일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경계 경보 ‘심각’ 조치에 따라 소관부서인 시 보건정책과와 보건소로부터 감염 현황과 대응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 내 감염 사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등 다중집합장소 수시 방역 ▲읍면동 보건소 손소독제 비치 확대 ▲투석 환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별도의 대책 수립 ▲체계적인 전담대응팀 운영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임시 휴원 대책 마련 ▲관내 신천지 신도 전수 명단 확보 방안 ▲긴급 대응 예산 확보 방안 ▲자진신고 체계 점검을 통한 보건소 선별 진료 유도 ▲관내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검토 ▲검사 및 조치, 예방 등 세분화된 인력 관리와 추가 인력 투입 및 확보방안을 통한 업무 과중 완화 등을 당부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시의 예방과 대응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 차원의 대응책도 제시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대응 ·

세종시의회 제61회 임시회 내달 23일 개최... 회기 17 → 5일로 단축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제60회 임시회 폐회 중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3월 23일에 제6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일로 회기를 축소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2월 23일 코로나19 경계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방역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제61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과 안전 등과 직결된 긴급하고 긴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의결했다.



· 코로나19 대응 ·

세종시의회 토론회와 제61회 임시회 연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월 22일 관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의원간담회를 취소한 데 이어, 제61회 임시회와 토론회 등 공식 행사 등도 진정 국면을 맞을 때까지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는 관내 코로나 19 확진 판정 발표 직후인 22일 오후 의회 차원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금남면 주민의 건강상태와 동선 등을 면밀히 파악한 데 이어, 의원 차원의 대응방향과 협조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 의장은 “관내 확진자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은 물론, 정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관내에서 확산되는 상황이 없도록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코로나 19 예방과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개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긴급대책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 코로나19 대응 ·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소상공인 전기·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제안

지역 상인들과 만나 고충 청취... 철저한 방역과 공직자 솔선수범해 지역 상권 살려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역 상권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달라고 제안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역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내에서도 식당과 목욕탕 등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에 서금택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고충을 청취한 결과, 지역 상인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전기와 수도요금 감면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인 것으로 파악했다.

서금택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당장 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만큼 매출이 급락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감면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할 시기"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장은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 내 공중화장실 전면 소독을 통한 청결 상태 유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관내 소독업체 등을 동원해 조치원 전통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과 주요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꼭 필요한 소비는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직자들의 주도로 지역상가 이용과 물품구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는 공직자들이 지역 상가를 찾아줘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끝으로 서 의장은 "타 지역에서는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이른 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대응 ·

세종시의회 마이크 등 청사 다접촉 · 취약부위 방역소독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3월 7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접촉 및 취약부위를 중심으로 청사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이날 소독작업반은 세종시의회 청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과 출입문 손잡이, 마이크, 화장실 내 변기와 수도꼭지, 냉·난방기와 환풍기 등을 집중 소독했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환경부에서 승인 받은 코로나 전용 소독제를 사용해 매일 세 차례 출입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 등 다접촉·취약부위를 소독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61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설치된 유·무선 마이크와 방송 운영장비 일체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2개월에 1회에서 월 1회 이상 소독 횟수를 늘려 청사 방역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청사 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

세종시의회 직원 간담회 통해 자녀돌봄 휴가 적극 활용 권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3월 2일 의정실에서 미취학 아동 등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서금택 의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보육시설 휴원과 휴교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와 자녀돌봄휴가 등 적절한 휴가제도를 심분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수립된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에 따른 상시 협조사항들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회는 정문과 후문 등 주요 출입구를 폐쇄하고 1층 동측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민원 발생에 대비해 민원인들을 위한 공용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세종시의회는 출입자에게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확인될 경우 청사 1층 임시보호소에서 대기 조치한 뒤,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해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과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월 18일 오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인사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세종시의 조성 목적과도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6명을 주축으로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전광판·승강장 모니터 활용해 의정 알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관내 전광판과 승강장 모니터를 활용해 문자와 이미지, 동영상 형태로 회기 안내와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한다.

먼저 세종시의회는 제61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광판과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BIS) 모니터, 시청 홍보 모니터를 통해 회기를 안내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을 고려해 의정홍보와 관련된 동영상 송출 시점을 선거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시의회 조치원읍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2월 7일 세종교육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조치원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손현옥 부위원장과 박용희 의원,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 이태환 의원을 비롯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대표자협의체와 비상대책위원회, 교육청 관계자들도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치원읍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 등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연관된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3월중 조치원읍 학교 이전재배치 종합계획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3~4월 중 조치원읍 중학교 학교군 설정(안) 관련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여성 의원 3명, 관내 여성 기업인들과 면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부의장과 박용희·손현옥 의원은 2월 4일 의정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회원들과 만나 여성 기업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세종지회 분회의 필요성'과 '여성 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여성 기업 지원 위원회 구성', '관내 여성 기업 홍보와 판로 확보 등을 위한 연례 행사 개최'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상호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회장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 회원들은 여성기업지원 조례에 명시된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여성 기업인들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지원책 등에 대한 소통 창구

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세 부의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세종시 기업지원과와 협의해 관련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시지회가 단독으로 구성되면 장기적으로 관내 여성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여성 기업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와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SEJONG CITY COUNCIL
NEWS
의원소식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세종시산림조합 감사패 받아

임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등 시 임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2월 20일 세종시산림조합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세종시산림조합 측은 세종시 임업인 지원과 푸른숲 가꾸기 등 산림 분야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금택 의장은 “임업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유산을 전승해 나가야 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땀 흘려온 임업인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서 의장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관내 임업인 지원과 임업 활성화에 힘써왔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JCI 세종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2월 1일 조치원을 수정웨딩타운에서 열린 ‘JCI 세종청년회의소 2020년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에 참석해 “꿈과 열정, 젊음의 패기로 지역 공동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안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 기업가 정신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 중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명구를 언급하며 관내 청년 리더에 대한 지원과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시민주권회의 전체회의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1월 3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시민주권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이 될 세종형 시민주권모델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안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한다”며 “세종형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자 세계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역설했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규제의 틀 깨니 ‘한솔동 상점가 지정’ 해답 보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최근 한솔동 내 3개 권역 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부서와 한솔동 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온 안찬영 부의장은 “법령상 한솔동 상점가 상인회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 등록을 통한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후 상점가로 지정하여 처리한 후, 향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의 개념을 신설해,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규정했다.

안 부의장은 “3월 2일 지역화폐 도입 시기와 맞물려 한솔동 상점가 상인회 등록 이후 상점가 지정이 완료되면 침체된 지역 상권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역 상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전문기관 설립 등을 면밀히 검

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부의장은 집행부에 상권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올해 상인회 조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인회 사무실 운영과 매니저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최근 한솔동 내 5개 권역 상점가의 상인회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간담회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2월 19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류권옥)를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관내 청소년 문제와 센터 운영의 어려운 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손 의원은 상담복지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센터장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종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센터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 전화 1388 홍보의 어려움 ▲ 동지역에 상담센터 분소 설치 ▲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 가출 청소년 임시보호시설 마련 ▲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시 부모교육 병행 ▲ 청소년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시행기관과 사전 논의 체계 마련 ▲ 24시간 상담 가능하도록 상담원 확보 등이 거론됐다.

또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상담 전문 인력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부의장은 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장점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시행 규칙과 예산 규모 등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 손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관계 공무원들과 세종과 충남지역 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세 부의장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난임은 개인 문제라는 기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양방과 한방을 병행하는 난임치료를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물론, 지원 대상 범위와 예산 규모, 한방치료비 책정과 한방치료 효과성 측정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 범위와 치료비 책정, 중복치료의 기준과 효과성 검증 데이터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종촌동)이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아빠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아빠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제6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양치교실 지원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장려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윤희 의원은 학교 양치교실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양치질을 습관화함으로써 구강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기 학생들의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은 개인적인 치아건강 유지는 물론, 치아우식 치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개인적 차원의 효과와 더불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치석 제거와 노인 임플란트 등 사회적 비용 경감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례에 근거한 양치교실 운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목 소나무 관리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1월 14일 '세종시에 세종시목이 없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LH로부터 이관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목들은 대부분 이팝나무와 벚나무로 이뤄졌다"며 "도시계획도로 가로수와 산업단지 내 수목,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시도 및 교차로에서도 세종시목과 다른 나무들이 식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 도시계획도로와 산업단지, 학교와 도시개발사업, 시도 등 가로수 및 조경 사업에 일정 비율 이상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설계 ▲ 나무의사 제도와 나무병원법인을 활용한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기능 강화 ▲ 소나무를 포함한 세종시 상징물을 도시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에 적극 활용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선택 아닌 필수'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찬영 부의장

안찬영 제1부위원장(한솔동)은 1월 14일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 부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를 근거로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실률이 약 51%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 LH 토지 분양의 최고가 입찰방식과 고분양가가 비싼 임대료로 이어져 상가 공실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최근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에 주목했다. 안 부의장은 "세종시 역시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이라도 예비 상점가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 부의장은 ▲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거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 교육과 사업 컨설팅 제공 ▲ 상인회 조직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상인조직화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내 신용보증재단 설립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 '큰 산 넘었다'



제60회 1차 본회의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월 14일 '2020년, 반드시 아름중 과밀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상 의원은 "주민 서명부 전달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로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올 1월초 심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3월 중에는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총 사업비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 중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은 중투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상 의원은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설립과 재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심사규칙 개정이 확정되는 5월쯤에는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RT 보조노선과 추가 노선 신설로 아름 고운 종촌동 교통여건 개선해야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월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름동의 교통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과 온라인 카페 게시물을 근거로 "시 교통정책이 BRT 노선 중심으로 수립되고 이로 인한 교통편의도 인근 지역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BRT 노선과 이격된 아름동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아름동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BRT 보조노선 확충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대전 반석에서 새롬중앙로, 다정중앙로 및 달빛로를 지나 조치원, 오송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상 의원은 24개 단지 약 2만 2천세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KTX 오송역 이용 편의 증대, 조치원 지역과 연계성 강화 등 노선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상 의원은 "BRT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인식해주기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여건으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녹지 보존과 이용 편의 고려해 고운뜰 공원 재정비해야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손현옥 의원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3월 23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운뜰 공원 조성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고운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 고운동 서측(가락마을 9단지~14단지) 인근 거주민들의 공원 접근성 개선 ▲ 노약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데크 설치 및 내부 둘레길 조성 ▲ 고사목 정리와 화장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의원은 “공원 인수 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운뜰 공원 관리 계획을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른 연구 용역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운뜰 공원은 반경 1km 이내 26개 공동주택 단지,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녹지공간”이라며 “소중한 공원을 잘 활용하여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만끽하는 재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햇무리교 상습 교통체증 해법이 필요하다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3월 23일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햇무리교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공개한 2019년 6월 행복청의 ‘제12차 행복도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보면, 출퇴근 시간대 도로나 교차로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곳으로 분류되는 서비스 수준 ‘C등급’인 지점은 모두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심지어 교차로와 도로를 지나가기 위해 많게는 4번까지 신호 대기를 해야 하는 서비스 수준 ‘D등급’인 곳도 햇무리교 세종 교차로 일대를 포함해 오전과 오후 시간대 각각 6곳과 5곳에 달했다”며 “내년 하반기 4-2생활권 약 4천여 세대 입주가 본격화되면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는 볼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청주-세종시-공주’ 구간을 잇고 햇무리교를 지나 정부청사 등으로 진출입로 역할을 해온 중앙공원 앞쪽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일명 ‘뚝방도로’)에 대한 폐쇄 계획이 거론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햇무리교 일대 교통 체증 해소방안으로 ▲ 교량의 보도부 일부를 차도로 대체하거나 교량 옆에 보조교량을 추가 건설 ▲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폐쇄에 대비해 해당 구간에 차량 전용 고가도로 설치 ▲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출퇴근 시간대 버스 이용요금 인하 또는 학생과 임산부 등을 시작으로 요금무료화 확대,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립박물관을 문화허브공간으로 조성해 북부권 관광벨트 구축해야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3월 23일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했다.

이날 이재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은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전시해 잊혀져가는 우리 생활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문화체험 교육공간이지만, 2012년 개관 이후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공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립민속박물관의 문화 허브공간 도약을 위해 ▲ 세종시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운영 및 시설 개선 요구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북부권 역사자원으로서 지속적인 보존 요구 ▲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 등 세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속박물관 본연의 역할 정립과 지속 가능한 자생적 발전을 위해 ‘비암사-운주산성-금이산성-왕의물-고북저수지-베어트리파크-뒤웅박고을’ 등을 연계한 북부권 관광벨트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생계 위기 처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적극 지원책 마련해야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3월 23일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세종시에서도 정부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중 2조 6천억원 규모로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 등 생계 지원이 이뤄지지만 전문가들은 현 추경만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국과 일본 등의 ‘재난 기본 소득’과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의 ‘현금 지원계획’ 등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에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검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현 시국을 ‘사회·경제적인 국가 재난사태’로 진단하고 “세종시에서도 정부 지원대책 뿐 아니라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3특성화고 설립 검토 지금 시작할 때



제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용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월 27일 ‘제3특성화고 설립 검토를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박용희 의원은 “기존 특성화고인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 특성화반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 계열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이텍고의 경우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정책연구가 시작되고 있다”며, “인문계와 특성화반을 동시에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여고를 완전한 인문계 학교로 육성해 지역 명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북부권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원읍과 동 지역 사이에 제3특성화고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여러 준비기간을 거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름-도담 생활권 연결하는 승강기 활용 보행로 개설해야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3월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람뜰근린공원 내 승강기 설치를 활용한 보행로 개설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우람뜰근린공원 양방향 즉, 아름초와 늘봄초 양쪽에 승강기를 세우고, 약 200m 구간에 공원 미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보행로 시설을 설치하자”며 새롬동 가덕초등학교와 새롬동 4단지 연결 사례는 물론, 안양시와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상 의원은 유사 설치 사례를 응용해 승강기를 설치하고 보행로 시설을 정비하면 교통 환경 개선과 과밀학급 완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승강기와 연계한 보행로 건설 방식은 총 사업비 절약과 공사 기간 단축, 환경훼손 및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반대하는 주민 여론 설득, 터널 내 우범화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상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상 의원은 “이러한 보행로가 신설된다면 아름초와 늘봄초 간 거리는 약 350m로 단축돼 인근 주민들의 도담동 BRT노선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민 불편 줄이려면 책임응용으로 자치사무 대폭 이양해야



제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서금택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3월 27일 '성공적인 책임응동제 운영과 확대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금택 의장은 세종시청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북부권 주민들의 민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책임응용으로 자치사무를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의장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세종시 본청에서 처리한 북세종권 건축 허가 민원은 987건으로 이중 37%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허가에 해당됐으며, 정보통신 업무 관련 북세종권 민원 역시 연 평균 931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장은 "이러한 단순 사무를 책임응에 위임하여 처리한다면 본청의 업무 부담 완화는 물론, 북세종권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이 사안을 이번 세종시 조직진단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짜뉴스와 불확실 정보 분별해 코로나19 대응에 힘 모아야



제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영세 부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부의장은 3월 27일 제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는 가짜 정보를 분별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주장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 부의장은 우려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시민들에게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확한 정보만을 믿고 정부와 시의 행동 지침 준수 ▲ 감염자와 접촉자에 대한 원망이나 비판보다 배려하는 자세와 차분한 대처 ▲ 특정 지역 봉쇄 등 즉흥적이고 감정적 판단이나 예단보다는 냉철한 상황 인식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4일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0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과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등 3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협의

제60회 임시회 폐회 중 2월 25일에 제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협의안'을 심사하고, 회기 연기 및 단축 운영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5일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현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손현옥 위원



안찬영 위원



유철규 위원



이영세 위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행정복지 위원회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청취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5일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감사위원회,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1월 16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한편,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는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일·가정의 양립과 가정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주요 발언

채평석 위원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여·야 후보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4년에 한 번 오는 총선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아트센터 진행 사항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타지역 사례를 참고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편안한 공연 관람과 공연장 내 관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종시 아트센터에도 '놀이방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노종용 위원은 2020년도 시 관광 수요를 549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관내에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관광안내소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 위원은 "관광 사업은 세종시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관광분야에 필요한 정책 개발이 절실한 시기로 꼼꼼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안찬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정책 발굴이 절실한 시기로 가구별 소비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종시의 상권 활성화 정책 개발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통계 자료와 주요 데이터의 취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세 위원은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의 진행 상황과 함께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며 요양시설이 혐오시설로 비춰지는 것은 현 정권의 치매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4일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 제1차 회의 결과,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변경안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2개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다.

회의 시간 단축 방침에 따라 미상정된 안건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다.



채평석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안찬영 위원



이영세 위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산업건설 위원회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청취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15~16일까지 제1~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1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5개 안건을 심사한 후,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세종테크노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1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농업정책보좌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순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주요 발언

김원식 위원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환 위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대비 세출 등에서 교통 관련 사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발굴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제언했다.

손인수 위원은 신도심 공동주택 분양 시 법정동과 마을 명칭을 가급적 일치시켜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을 설치·운영할 때 가설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시행 전 꼼꼼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유철규 부위원장은 공공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어울링의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어울링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한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

제6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총 10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은 부결하고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했다.

| 주요 발언

차성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수돗물 이용을 장려하는 등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돗물 음용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



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환 위원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재생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식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 선정과 업무 전문성 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채용을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로컬푸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위원 수와 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철규 부위원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예정지역 상정수준을 변경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 삭제 ▲도로지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 데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안전과 청정함을 인지함으로써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수돗물 음용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누구나 수돗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성호 위원장

유철규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

손인수 위원

이재현 위원

이태환 위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교육안전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15~17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조례안 2건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1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윤형권 부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박성수 위원외의 보임(기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을 확정했으며, 손현욱 위원은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고, 조례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교육청에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다"며 고3 학생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교육공동체가 요구하는 정책들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세종교육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1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도입된 소방 드론이 급박한 화재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치밀한 운용계획을 수립"을 당부하면서 "올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현황 점검 회의

2월 5일 교육청과 시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현황 및 대책 방향을 듣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유입 차단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육청에는 정상적인 개학 일정에 맞춰 2월 중으로 방역 관련 물품 지원 공급 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 위원장은 시가 관할하는 학교 밖 청소년기관과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도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손현욱 부위원장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생 및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마스크와 알코올 소독제를 충분히 비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은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체계적인 상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세종시청과 교육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 및 구성하여 상호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희 위원은 타 지역 학교에서 개학 연기와 유치원 휴원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학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속히 휴원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세심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위원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교육여건 저하 및 공백이 없도록 학생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신건강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사회적응, 불안감 등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 정신건강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

제61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2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상병헌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상병헌 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



박용희 위원



임채성 위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올해 6월 말까지
채평석 신임 위원장 체제로 재편...
신년 활동 재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이하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1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채평석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윤형권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렸다. 그 결과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시민사회와 공조를 통한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채평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채평석 신임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박성수·손인수·손현옥·임채성 위원 등 총 6명으로 재편되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평석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위원들과 함께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행수특위·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월 3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각 정당에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총선 공약 건의요령》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 행정부 세종이양부서 설치
- 국회의원선거구 및 재외교동 설치
- 세종특별자치시 등 임시소재 지역: 2025년 1월 1일 이전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3월 27일 제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17명)이 참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상병헌, 안찬영, 이태환, 차성호, 박성수 의원 5명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차 회의를 통해 선임할 예정이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26일 열렸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지지부진한 대학캠퍼스 유치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시키고자 대학캠퍼스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4일 개최됐다.

연구 모임

세종시의회,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식 개최

유철규 대표의원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설치기준과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할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연구모임 대표)은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을 2월 17일 발족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모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연구모임의 명칭을 확정하고,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 및 올해 활동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은 유철규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안찬영 의원, 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책임연구원, 세종시체육회 황성연 팀장, 세종시 체육진흥과장,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장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종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연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유철규 대표의원은 발족식에서 “시의회가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거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설치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기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궁극적으로 세종시 체육시설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주제별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핵심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규
대표의원



연구
모임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가칭)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차성호)은 2월 19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도·농 상생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연내 추진 연구과제 및 연구방향 등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차성호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이재현 의원, 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유인호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임수연 청년창업농, 세종시 농업축산과장, 세종시 로컬푸드과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세종시 농촌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쟁력 있는 6차 산업 발굴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도·농 상생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결성되었다.

‘도·농 상생 발전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 관련 분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차성호 대표의원은 발족식에서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연계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 성 호
대표의원



의원
생각함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명구처럼 누군가의 말 한 마디는 깊은 사색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활동을 예측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신 전자회의록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단상’을 들여다봤다.



서금택
의장

“올해는 조치원전통시장이 열린 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치원전통시장 2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을 기점으로 주변 상권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제60회 임시회 개회사 중



안찬영
부의장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전 세계에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새로운 스마트시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제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중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해



이영세
부의장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나와서 일정 기간 동안 잘 케어되는 것이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잖아요. 그걸 개인, 엄마나 가정에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그것을 같이 케어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높은 세종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제6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중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채평석
의원

“우리 집안이 기증한 유물들이 어디 가서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한테 유물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려 드려야 되고 또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되지 않을까...”
- 제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중



노종용
의원

“우리의 색을 정확히 지정할 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용역 할 때 의회에서도 많이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했거든요. 여기 표기한 대로 세계적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 제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중 ‘3차 문화도시 지정 준비’에 대해



이윤희
의원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그거를 우리가 100% 담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 인식 안에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가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제6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중 ‘웰다잉 관련 연구’에 대해



이태환
의원

“결국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신뢰 있게 말씀도 하시고 일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우리 행정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한 번, 두 번 깨져 버리는 순간 우리 시는 정말 당연한 일들도 앞으로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 제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



김원식
의원

“국가산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또 국가산단의 조성 목적에 상응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앵커 기업을 중점 공략해서 올 수 있게끔 노력해야...”
- 제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



차성호
의원

“이게 통과됨으로써 면으로 간다는 어떤 단언이나 단정을 절대 지어서 되는 건 아니고, 김원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공모 절차라고는 하나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공론이 필요하다.”
- 제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이재현
의원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이걸 넣어서 영농 폐기물 수거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근본적으로 밭에서부터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정부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 제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 ‘농림부의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지원 신규사업 수요 조사’에 대해



유철규
의원

“동 지역에서는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서 뭔가 해결하셔야 해요. 자꾸 제도 탓만 할 게 아니에요. 인접 도시하고 같이 권역을 설정한다든가, 물론 택시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 제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



손인수
의원

“다 공공성도 있고, 그 안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복잡한 관계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인데 돈으로만 할 거면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기업’ 하지 뭐 하러 공공기관이겠습니까?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시민들 간의 관계, 이것으로 발생될 파급효과,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제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



상병현
의원

“4-1, 4-2, 6-4 생활권에 개교가 줄줄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의 여러 학교들도 그렇고요. 특히 과대·과밀인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수요 예측을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사나 또는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향후 개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을 제대로 하셔서 동 지역에서 이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60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중



임채성
의원

“운동을 즐기고 체육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 선수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취미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보이거든요.(…)외부로 빠져나가는 학생선수들,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제60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중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에 대해



박성수
의원

“거의 심야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관내 자체에 100% 물이 흐르는 편이에요. 그것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오버플로우(overflow)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는 침전물도 있겠고요. 여름 우기 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세 부서가 협조를 하셔서 올해만큼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 제60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중 ‘오버플로우로 인한 오수의 도심하천 유입’에 대해



손현옥
의원

“예전에 보면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옷 챙겨 입고 그러느라고 대피를 못 해서 사고가 커졌잖아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천안에서 다중이용시설 비상 탈출용 가운을 비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이거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60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중



박용희
의원

“100명 정원 모집에 19명이 지금 결원인데 일단 성남고에 배정된 학생들 그리고 거기 인문계열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신 관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성남고하고는 여러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일단 학생들을 위한다면 그 학생들도 우리 세종시 교육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남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60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중 ‘고입 배정’에 대해



제61회 임시회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61회 임시회는 2020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됐다. 제61회 임시회 1~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에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4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2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9건이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안자 의장

주요내용 결산검사위원 선임(7명 - 시의회 의원 2명, 공인회계사·세무사 2명, 유경험자 3명)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시장

주요내용 통합관리기금의 적용범위 및 존속기한 -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
※ 특별회계 제외(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 등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안자 의장

주요내용 결산검사위원 선임(7명 - 시의회 의원 2명, 공인회계사·세무사 2명, 유경험자 3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원안가결)

제안자 시장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 신축 - 연면적 779.11㎡, 2,000백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변경 건립 (토지) 2,937백만원 → 1,265백만원 56.9% 감 (건물) 건축비·시설비 등 사업비 16,586백만원 → 7,080백만원 57.3% 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주요내용 감사기간 2020.6.1~6.10(10일간), 감사대상 56개 기관 및 부서, 감사반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 등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시장

주요내용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감염병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보급 및 홍보 등), 관련업무 민간위탁 근거 마련(위탁기간 3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제안자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 될 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 유치 적극 추진하기 위한(구성목적), 활동기간 선임일로부터 ~ ` 21.12.31.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가결)

제안자 시장

주요내용 수질정화시설 운영 등 호수공원 수질관리, 위탁기간(5년), 위탁금액(총 3,472백만원 / 연 694백만원), 위탁내용(수질정화시설 운영 및 호수수 수질분석 등 수질관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추가(공동택배함, 파고라 및 공동 텃밭 등),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신설(쇠퇴도시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유철규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조례의 제명 변경,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목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유철규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건축허가 시 일부 기준 완화,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사항 개선·보완(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 정비)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공공기관 범위 규정, 시장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 규정 등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손인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 규정(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수돗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수돗물 음용 촉진자 표창 근거 마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안자 손현옥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교육감의 책무 규정(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교육 운영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교육실시 1년에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위원회의 운영규정 추가(교육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교육감의 책무 규정(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 규정, 1회용품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금지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교육감의 책무 규정,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손인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교육감의 책무 규정(매년 장애학생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매년 수요조사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 장애학생 편의지원 공헌 개인 및 단체 포상근거 마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안자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마련 의무 규정,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 규정,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제안자 박용희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교육감의 책무 규정(학습부진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탄력적으로 운영, 매년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습부진학생 지원 근거 마련

그 외 처리 안건

의장 제의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시장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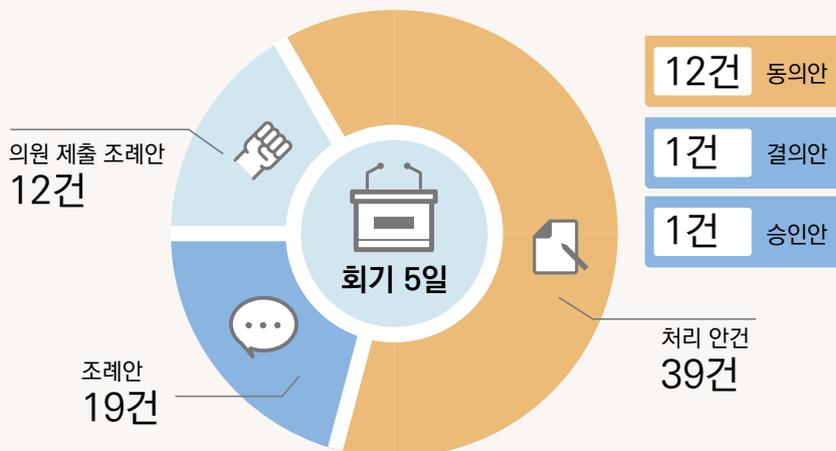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원안가결)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교육감 제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숫자로 보는 제61회 임시회

» 의안 종류별(본회의 통과)



» 소관 상임위원회 별 처리 안건





제60회 임시회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60회 임시회는 2020년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됐다. 제60회 임시회 1~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바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건,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2건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원안가결)

제안자 의장

주요내용 행정복지위 위원 1명 사임 ⇒ 교육안전위 위원 1명 보임, 상임위원회 위원 수 변경(행정복지위 6 → 5명, 교육안전위 4 → 5명)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시장

주요내용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던 제4조가 삭제(2017. 7. 20.개정)되었음에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실적으로 정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원안가결)

제안자 의장

주요내용 교육안전위 부위원장을 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운영 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 (수정가결)

제안자 시장

주요내용 세종테크노파크(사용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사용재산), `20.1. ~ `25.1.(5년), 사용료 면제, 미래차연구센터 등 운영(용도)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바 장려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박성수 의원

주요내용 육아휴직 및 장려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장려금 지원신청 절차,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안자 시장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전문적인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제안자 시장

주요내용 예정지역의 9개 법정리 중 4개 리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완료 또는 수립 중임에 따라 법정동으로 전환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함(안 제2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주차요금, 과징금,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함(안 제3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경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시설면적 800㎡당 1대 (시설면적/800㎡)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교육감

주요내용 관서의 장애에 위임한 사무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사항 삭제(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범위 축소 (안 제6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자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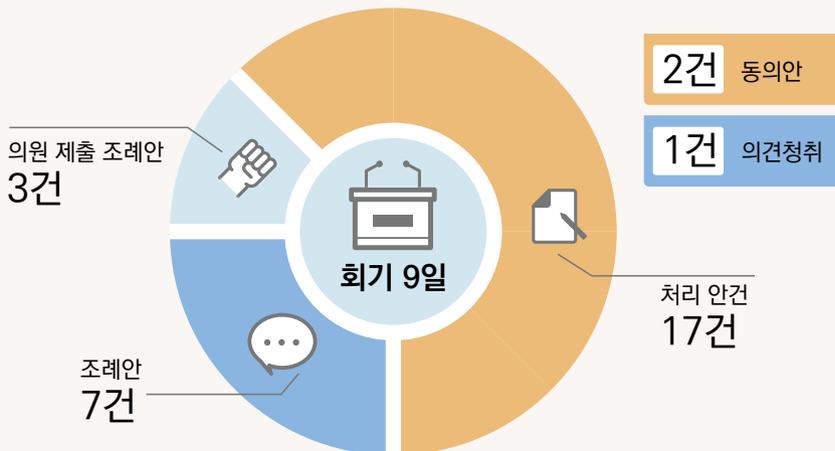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등

**그 외
처리 안건**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제의**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 교육감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숫자로 보는 제60회 임시회

» 의안 종류별(본회의 통과)



» 소관 상임위원회 별 처리 안건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하나 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가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난관에 부딪히면 똘똘 뭉쳐
 이겨내는 저력이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국민 모두에게 잠재된
 '상생 백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의원과 사무처 직원 모두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원하며,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힘차게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 26일 본회의를 마친 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방역을 완료한 관내 한 음식점을 찾아 점심을 먹었다.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입법정보

50
생활법령

61
법령
해석 사례



주요입법동향
54

최근 공포 법령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령

최근 시행 법령

65

67 타 지자체
제개정 자치법규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천송이와 도민준은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민준은 천송이에게 자신은 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천송이는 도민준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일 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혼 후 천송이는 도민준이 학력 및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천송이는 도민준을 상대로 약혼해제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01 철수

나는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에 대해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천송이의 잘못이 도민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천송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그리고 「민법」 제804조에 따르면, 약혼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에 관한 사항은 없잖아. 따라서 천송이는 약혼해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어.

02 영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야. 따라서 도민준은 이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약혼하기 전에 천송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해. 그리고 나는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은 「민법」 제804조 가운데 제8항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따라서 천송이는 「민법」 제804조를 근거로 약혼해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

+++ 평결

정답은 2번. 영수입니다

본 건은 학력, 경력, 직업 등이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따라서 천송이는 「민법」 제804조제8항을 근거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준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채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따라서 “나는해”씨를 비롯해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금 잔금을 감액받은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대철씨와 미옥씨. 조정조서에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대철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대철씨 100%, 미옥씨 0%로 국민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철씨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대철씨는 본인의 국민연금을 미옥씨와 나누지 않고 100% 다 수령할 수 있을까요?



01 대철씨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청산조항을 포함해서 조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제 국민연금은 당연히 제가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02 국민연금공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철씨의 경우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판결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국민연금공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철씨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입니다.

대철씨와 미옥씨는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 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2018두65088).

또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대철씨와 미옥씨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대철씨와 미옥씨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반소장과 준비서면 등에 담긴 재산분할 등에 관한 주장이나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산분할절차에서 미옥씨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분할 비율 0%)하기로 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2018두65088).

따라서 조정조서에 연금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비록 재산분할의 청산조항을 기재하였어도 그 효과가 당연히 연금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절차에서 분할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산조항을 이유로 한 대철씨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은술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술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임복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중 압수·수색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란에 날인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01 임복제

아니! 판사의 날인도 없는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겁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품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02 은술

비록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라도 영장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품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 판결

정답은 2번입니다.

본 건 사안은,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지만, 이는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위 판결에서는 “압수물품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영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따라서,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은술검사가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이 사건 압수물품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애뜻해”씨의 아들 “소중해”군은 만 2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중해”군은 교통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소중해”군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다가,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후 결국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뜻해”씨 부부는 5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게 된 아들 “소중해”군을 대신해 당시 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소중해”군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01 보험회사

“소중해”군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은 5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02 애뜻해

사고는 5년 전에 발생했지만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한 후 그 힘든 치료를 몇 년 동안 받았는지 아세요? 결국 얼마 전에야 장애진단을 받게 됐다고요. 말씀하신 손해를 안 날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장애진단을 받은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판결

정답은 2번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는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

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 직후에는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뿐 5년이 지난 후 확정된 장애진단과 직업 관련된 증산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치료가 계속되면서 관련 증상이 점차 드러나게 된 경우, 치료경과나 증상의 발현

시기,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최종 진단경위나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고 직후에는 장애진단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장애의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 단순히 교통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라고 보아 위 사례의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가 아니라 “소중해”군의 손해가 확정된 날인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아직 유효하므로 “소중해”군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공포법령

0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20. 3.17 공포 / '20. 3.17 시행/대통령령 제30536호)



종전에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직장적응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사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02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3.17 공포 / '20. 3.17 시행/대통령령 제3053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한정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 건설공사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의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사업면적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하에서 4천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근공포법령

03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0. 3.24 공포 / '20. 3.24 시행/법률 제17102호)



현행법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폐질환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은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슴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불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 가슴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관련 정보 및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중적 지원체계를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4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20. 3. 24 공포 / '20. 3. 24 시행/대통령령 제3054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에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근 국회 접수 주요 법안

0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1987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제·개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법령상 의무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에 결정되는 등 현장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0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최근 국회 접수 주요 법안

0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0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최근 소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그 촬영자 또는 반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3 신설 등).



최근 입법 예고(주요법령)

0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3. 31. 까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6444호, 2019. 8. 20. 공포·시행)으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환부대상이 확대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0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4. 7. 까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명환경관리구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최근 입법 예고(주요법령)

0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4.20. 까지)



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발견 신고,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단체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명령으로 손실이 생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개정됨(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야생생물 수입·반입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0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4.22. 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건의사항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05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4.27. 까지)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근 입법 예고(주요법령)

06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5. 4. 까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하여 시설 내 화장실 등에 비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보다 손쉽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정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07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5. 4까지)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 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08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5. 6까지)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880호, 2020. 1. 29.)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폭염 및 한파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 등을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 범위로 추가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신고 등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해석사례

01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질의(법제처-19-0672 / 회신일자 2020.02. 20.)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에게 그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이처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사례

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관리위탁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통해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그 행정재산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각주: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례 참조)인 반면 전대는 「민법」 제6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법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사법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하는 등 사경제거래의 객체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므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전대에 「민법」상 계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해석사례

02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질의(법제처-20-0059 / 회신일자 2020.03.20.)

질의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정한 것(각주: 2005. 11. 22. 의안번호 제173417호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2. 10. 18. 의안번호 제1902223호로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한편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제2

법령 해석사례

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제3조제5호), 재난이나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제3조제5호의 2)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하면서(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32조)하고 있는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구조와 지휘·통제 계통을 확립하고 있는 재난안전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고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안전감찰에 대해 규율하면서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방법이나 제주특별법 제13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자치감사에 대해 정한 것과는 별도의 절차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와 재난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최 근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3월 25일 시행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갓길 통행 허용 대상 확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월 25일 시행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 3월 28일 시행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 의무 기록을 포함)에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 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공중보건 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의료기관 고용 금지를 명시하여 공중보건 의사와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

최 근 시행법령

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권한을 명시하고자 하고,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월 1일 시행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4월 1일 시행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휘발유 등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월 17일 시행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른 자치단체 제개정 자치법규

서울 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시행 2020. 1. 9.

제안이유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하고, 시 관내 산업현장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산업재해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4조)
- 나.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제6조)
- 다. 노동안전조사관제도(안 제7조) 및 민·관 협의체 구축(제9조)
- 라.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규정(제10조)
- 마.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2020-1-9 조례 제 74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서울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
4. 서울형 사업장 위험·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민·관 협의

체 구성 및 운영

8.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9.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 및 노동취약 계층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④ 시장은 제3조 적용대상의 노동안전보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노동안전조사관)** ① 시장은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및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 ④ 제3조 적용대상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주의 협조)** 제3조의 적용대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지원, 출입허용, 활동시간 보장 등 협력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 및 활동시간 보장
 7. 하청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
 8.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협력

- 제9조(민·관 협의체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운영한다.
- ② 시장은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③ 시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안전조사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3장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이 된다.

-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 안전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5조(결격사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원 해촉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회 해촉 해제) 절차에 따른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7485호, 2020.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 향유와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및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4년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9조)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1- 1 조례 제 60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 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0.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20. 3.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본계획: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전담조직: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

(제정) 2020- 3- 1 조례 제 53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
2.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2.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4.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5.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16.

제안이유

가. 경기도에는 축산 농가가 다수 있어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뿐만 아니라 동물 전염병의 확산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외부 인력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음.

나.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다.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그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심리적 외상의 예방교육 실시와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는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심리적 외상의 치료대책 마련, 치료 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사.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심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심리지원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3-16 조례 제 65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매몰을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참여하거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의 수립)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의 투입 전·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

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심리지원단 지원) 도지사는 제9조의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0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시행 2020. 3. 6.

제안이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적용대상 및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사후관리와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제정) 2020-3-6 조례 제 45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의 취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축산물 생산과 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고 동물복지 증진 및 사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축산농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이다.

제5조(인증지원)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 및 경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인증된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26호, 202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내의 바가지는 ‘오케스트라’



김 상 욱 (한솔동 첫마을1단지)

3남 3녀의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난 나의 유년 시절, 1970년대 아버지의 권위와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아버지 말씀은 지상명령이었고, 기침 한 번에 온 가족이 숨소리를 죽일 정도였다. 어쩌다 단문으로 하시는 아버지 말씀 한 마디에 우리 가족 모두 숨소리마저 죽인 채 신경을 곤두세워 귀를 여는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그때 가장의 존재는 가정의 ‘제왕’ 과 같았고, 나에게도 신적인 존재로까지 인식되었다.

얼마 전 금요일, 퇴근 후 저녁나절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돈 뒤 소파에 앉아서 휴식모드로 들어가려는 찰나, 아내가 내게 “똥이(애완견 이름) 먹이 그릇 좀 사다 줘요”라는 게 아닌가.

원래 집에서 개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지만 아이들이 워낙 성화를 해대 어쩔 수 없이 애완견을 기르는 것까지 참고 이해했는데, 이젠 가장인 날더러 개밥그릇(?)이나 사오라는 게 내키지 않았다. 그것도 온종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에게 말이다.

순간, 그런 걸 남편더러 시키는 아내에게 화가 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허락해준 애완견조차 관리를 제대로 못해 애비가 개밥그릇이나 사오도록 만든 아이들에게 부직부직 울화가 치밀었다.

도대체 이 집안에서는 가장을 뭘로 보나 싶어서 결국 아내더러 “집에 사람이 몇인데 퇴근해서 쉬려는 내게 개밥그릇을 사오라는 거야?”라는 말이 올라올 뻔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가장들이 어디 그런 말 마음대로 밖으로 내놓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랴. 결국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꼭 참고 침착하게 다른 사람이 갔다 오면 안되냐고 되물었다.

“밥 하다 말고 제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라는 아내. 큰 딸은 밤에 내보내기 그렇다 하고, 아들은 축구 하다가 다리를 접질려 목발을 짚고 다니는 상황이었다. 아내의 말을 들으니 나도 “그렇다고 이 시간에 가장에게 개밥그릇 심부름을 시키는 게 말이 돼?”라고 말할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아내의 ‘하명’ 한마디 추가.

“나가는 길에 이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려주시면 안될까요?”

그걸 내게 말기는 아내도 이번엔 살짝 미안했는지 말 꼬리에 ‘용’을 붙였다.

“그래 이왕 버린 몸, 하나 더 해준다고 가장의 위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기꺼이 아내가 준 음식물 쓰레기 봉지도 받아 들었다.

김치냄새 풍기는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뱃속부터 가장의 포스가 느껴지던

아버지 세대와 판이하게 달라져 버린 요즘, ‘그때의 아버지가 지금의 이 막내아들을 보시면 뭐라 하실까?’ 하는 영롱한 의문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떠오른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온 글귀 하나.

“남편들이여,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를 일류 오케스트라 연주로 생각하라!”



세종의 아름다운 3대가족을 보며



이영애 (전동면 배일길)

한 동네에 살면서 길거리에서건, 혹은 이른 아침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얼굴을 익힌 사람이 유독 자주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매일 그 시간, 그 차량에 한결같이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버스에 몸을 싣다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

차에 타고 보면 자리에 앉자마자 목주 기도에 빠지는 50대 아주머니, 언제나 분홍빛 가죽 핸드백을 든 20대 초반 아가씨, 남 시선에 아랑곳 차 안에서 햄버거나 빵류로 끼니를 허겁지겁 때우곤 코를 고는 30대 아저씨가 된다.

그런데 그중에 유독 내 시선을 끄는 어른신이 계시다. 연세가 이미 칠순쯤에 다다라 보이시는 이 어른신은 예사 사람들과 약간 다르시다. 가죽 손가방을 들고 앉아 버스를 기다리며 신문을 보다가 버스에 탑승해 자리에 앉으면 열심히 신문의 사설이나 어떤 기사를 조그만 수첩에 적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아예 빨간색 펜으로 신문기사에 밑줄까지 째 그으며 돋보기 너머에 있는 활자의 세계에 푹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문득 할아버지의 가죽가방 속 수첩은 지식창고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이하고도 놀라운 것은 덜컥거리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의 동요 없이 한결같이 글쓰기를 하신다는 점이다.

옛그제였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필사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증이 발동해서 살짝 '커닝'을 했다. 내용은 이번에 우리 세종시 상가 주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할인해주거나, 납기를 연장해줌으로써 상생을 실천한다는 기사였다.

'혹시 할아버지 자녀분들 중에도 자영업을 하는 분이 계신가?'라는 궁금증을 갖는 찰나, 마치 커닝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쳐 일순간 굳어버렸다. 할아버지는 그저 빙그레 웃으셨다.

"손주놈한테 좀 가르쳐주려고...애들이 너무 어드워."

선문답처럼 던지신 할아버지의 한마디. 애들이 너무 어드다는 말씀 속에는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할 줄 알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생각들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물론 입시 준비 때문에 교과서에만 파묻혀 있는 것도 걱정스러움의 일부였을 것이다.

"손주들한테 시사 상식 공부시켜 주시나 봐요. 하긴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할 줄 알지 주소가 어찌 바뀌는지, 우리집 새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요. 호호호. 너무 좋으시네요"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그저 피식 웃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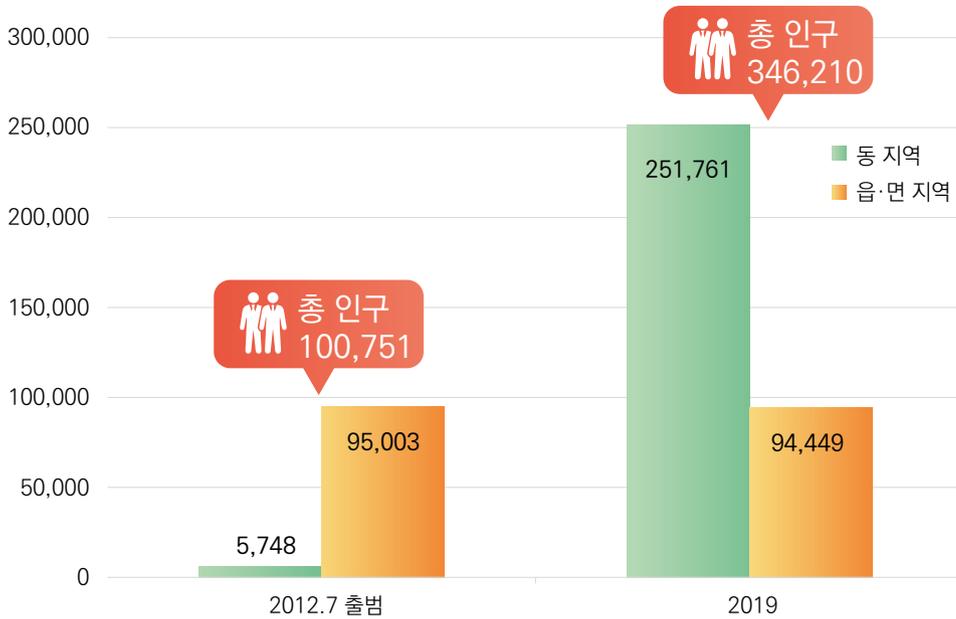
버스에서 내려 출근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았다.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은 외롭기만 하다. 용돈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없고... 모두 다 출근하고 학교 간 집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다 보니 온종일을 기다려 보아도 찾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가 다반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싶어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을 정도로 외롭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다가 오갈 데 없이 사시는 어른신들이 적잖다. 그런데 내가 버스 안에서 만난 이 어른신은 손주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자식들 누군가가 모시며 사는 게 확실하다. 어른신 또한 손주에게 친절히 알찬 공부도 시켜주는 학구파(?)이시니 참 멋진 3대가족이다. 우리 세종의 어른신과 아들, 며느님들, 손주들 모두 다 이런 아름다운 대가족이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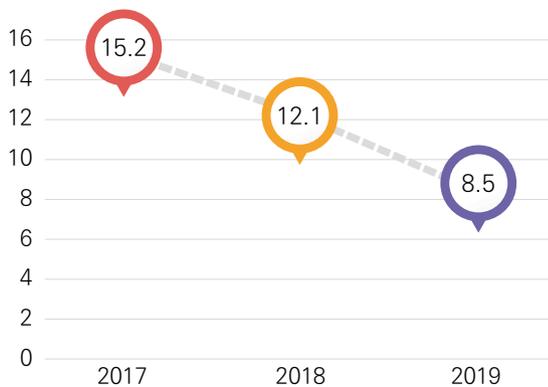
통계로 본 세종

통계는 세종시와 관련된 주요 시정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정의 바로미터'와 같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의 주요 지표의 변화를 통해 2020년 세종시의 오늘을 진단하고, 더 나은 내일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세종시 주요 통계'를 인포그래픽으로 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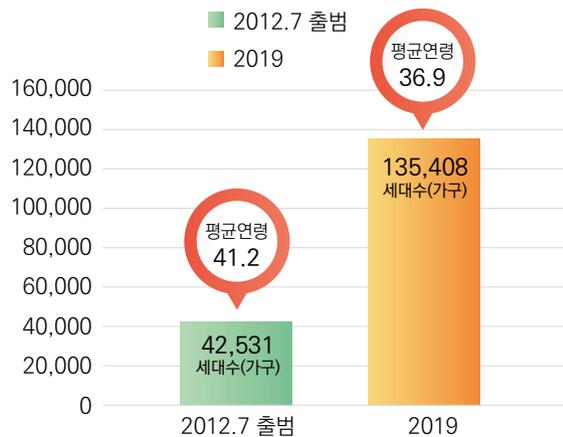
| 인구 단위: 명, 2019년 기준



| 최근 3년간 인구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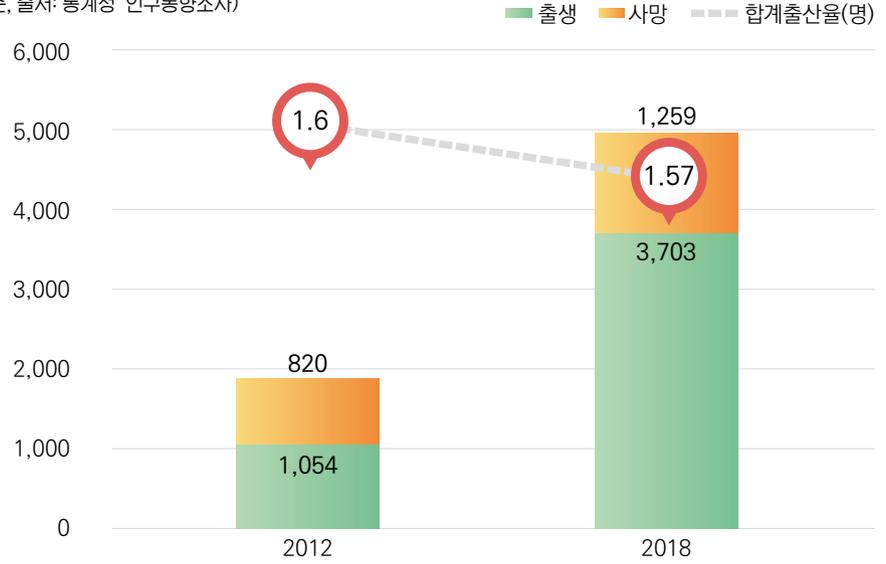


| 평균 연령 & 세대 수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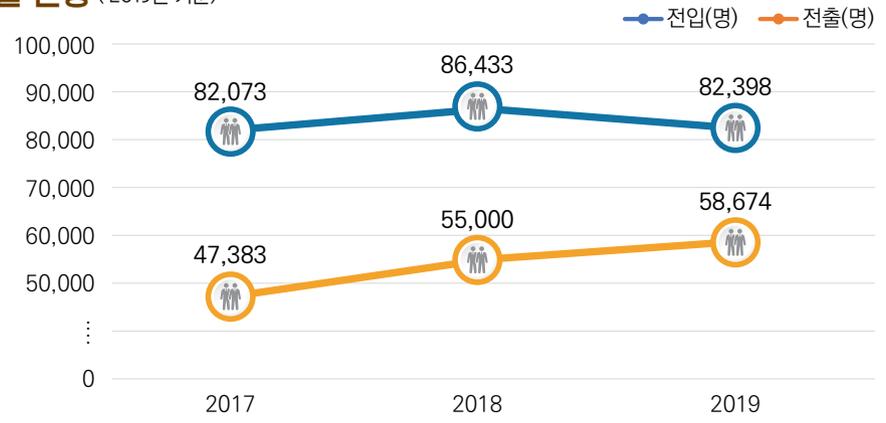
합계출산율 (2018년 기준,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전국 1위
출산율에도
합계출산율은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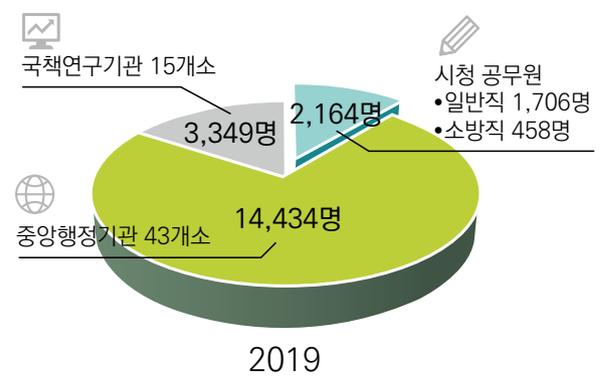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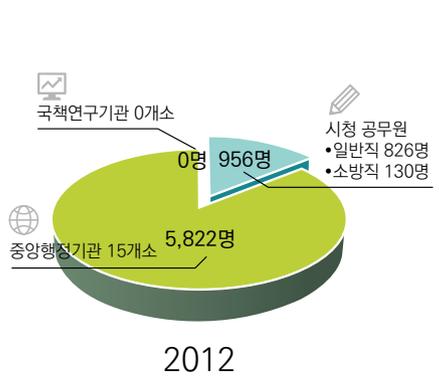


최근 3년간 전입·전출 현황 (2019년 기준)

2012~2019년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총 227,046명



공무원 수 (2019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5개 세종시 이전 완료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NEWS PAPER



2020.03.23 [충북일보] 지역 16면

충북일보

2020년 03월 23일 16면 (지역)

세종시의원 의정활동 잘했다

1인당 조례 발의 3.5건 등 지방의회 평가서 3위

세종시의원들의 최근 1년간 주요 의정활동 실적이 17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3번째로 우수했다는 평가가 시민단체들에게서 나왔다.

세종시의회는 226개 기초(시·군·구)의회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2012년 7월 출범했다.

최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현 의회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와 '본회의 질의(5분 발언)' 실적 등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전국 광역의원 824명이 이 기간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2천211건으

로, 1인당 2.68건 꼴이었다.

지역별 1인당 실적은 △세종(4.79건) △서울(3.52건) △세종(3.50건) 순으로 많았고 △경북(1.47건) △경남(1.62건) △강원(1.67건) 순으로 적었다.

또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대상 질의를 포함한 5분 발언 실적은 총 1천817회(1인당 2.21회)였다. 의원 당 실적은 △울산(4.18회) △부산(3.91회) △세종(3.89회) 순으로 많았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범적으로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여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가 없다.

22일 현재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시·군·구)의원 수는 총 2천926명으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의원 1인당 3.81명 꼴이다. **홍선취재팀 / 최준호 기자** (11.2·10.7cm)

2020.02.18 [충청신문] 종합 03면

충청신문

2020년 02월 18일 03면 (종합)



세종시의회가 17일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을 발족,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사단·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기반 마련”

시의회 연구모임 발족... 설치기준·운영방안 수립 계획

세종시의회가 17일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유철규) 발족식을 개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연구모임의 명칭을 확정하고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 및 금년도 활동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유철규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안찬영·상병현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세종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주제별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 핵심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규 대표의원은 “시의회가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거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설치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기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시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규모 기자 lln1301303@dailycc.net (11.18.2.2cm)

2020.03.31 [대전일보] 정치 04면

대전일보

2020년 03월 31일 04면 (정치)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공약 촉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4·15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병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이하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30일 오전 세종시청 정문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 정책, 총선 공약 반영 촉구 성명서’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종식 기자 (11.05.6)cm

2020.02.20 [중도일보] 인물 20면

중도일보

2020년 02월 20일 20면 (인물)

세종시의회 도·농상생 머리맞댄다

연구모임 발족... 11월까지 활동 지역 특성 맞는 발전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가정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차성호)은 19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도·농 상생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식에서는 연례 추진 연구과제 및 연구방향 등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차성호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의회 이재현·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유인호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청년창업농 임수연씨, 김홍영 세종시 농업축산과장, 이윤호 세종시 로컬푸드과장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또, 이 연구모임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세종시 농촌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경쟁력 있는 6차 산업 발굴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도·농 상생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결성했다.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선진지 견학, 관련 분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차성호 대표의원은 발족식에서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연계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백은석 기자** (11.5.11.7)cm

2020.03.12 [충청일보] 지역 13면

충청일보

2020년 03월 12일 13면 (지역)

“버스 기다리며 의정소식 보세요”

세종시의회, 전광판 등 활용 회기·의정활동 사항 안내

세종시의회는 지역 내 전광판과 승강장 모니터를 활용해 문자와 이미지, 동영상 형태로 회기 안내와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의정홍보 전략을 다변화하고 대(對)시민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세종·최성열기자** (11.7·8.3)cm

시의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61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광판과 승강장 내 버스 정보시스템(BIS) 모니터, 시청 홍보 모니터를 통해 회기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4·15 총선 기간을 고려해 의정홍보와 관련된 동영상 송출 시점을 선거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말처럼 안내 설치된 전광판과 모니터 홍보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1.15 [대전투데이] 정치 02면

대전투데이

서금택 의장 “올해 사자성어 ‘동주공제(同舟共濟)’”

세종시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새해 첫 회기를 진행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의지를 담아 ‘동주공제(同舟共濟)’로 선정했다”며 “시민과 한마음을 한뜻으로 세종시의 이상향인 행정수도 완성에 함께 도달하자는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인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6개 안건이 처리됐다. 또한 김원식 의원과 상병현 의원, 안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에 세종시 목이 없다’는 주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 특인 소나무를 일정 비율 이상 식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상병현 의원은 ‘반드시

아름중 과밀문제 해결되길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 추진과 과밀학급·원거리 배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안찬영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통해 상권활성화 조례 제정과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22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인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경청하고 읍·면별 주요 시장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세종=김태선기자 (14.9*8.0)cm

2020년 01월 15일 02면 (정치)

2020.03.30 [중부매일] 지역 12면

중부매일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본격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7일 제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상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17명)이 참여한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상병현, 안찬영, 이태환, 차성호, 박성수 의원 5명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홍준용/세종 (6.7*7.8)cm

2020년 03월 30일 12면 (지역)

2020.01.15 [충청일보] 지역 13면

忠淸日報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市, 상가 공실률 대책 필요”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한솔동·더불어민주당·시진)은 14일 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가 공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해 9월 기준 시내 동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하고 한솔동 일부 상가의 경우 2곳 중 1곳이 빈 점포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상업 용지가 과잉 공급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고가 입찰에 따른 고분양가가 비싼 임대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벗어 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의 상권 활성화 정책은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만 집중돼 있으며 전통시장이 없는 동 지역 골목 상권을 위한 예산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는 동 지역 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최성열기자

(5.8*15.0)cm

2020년 01월 15일 13면 (지역)

2020.02.10 [충청일보] 지역 13면

忠淸日報

세종시의회, 조치원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논의

무작위·근거리 추첨 등 3개안
설문·투표로 내달 최종안 선정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과 손원옥(교육안전위 부위원장)·박용화·김원식·이태환 의원이 지난 7일 세종교육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조치원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학년도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조치원을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교원 및 학부모 간담회, 사전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위원 추천 형태로 조치원읍 중학교 배정 방법 마련을 위한 대표자 협의체(지난 해 12월)가 구성됐다. 총위원 수는 21명으로 조치원학구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원,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자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지원 후 근거리 추첨 100% 안과 지원 후 무작위 추첨 100%, 근거리 추첨과 무작위 추



지난 7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과 의원들이 조치원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첨 혼합 배정 안 등을 제시 3월 중 설문조사와 대표자 협의체 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 배정안 결정 방법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 의장은 “조치원 전부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시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자유 의제를 가지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결정을 하기 위해 이

제안이 마련됐다고 생각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조치원읍 교육 주제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조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치원읍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 등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연관된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다음 달 조치원읍 학교 이전 재배치 종합계획 수립에 이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3-4월 중 조치원읍 중학교 학교군 설정(안) 관련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최성열기자 (17.8*13.0)cm

2020년 02월 10일 13면 (지역)

2020.03.24 [대전투데이] 정치 02면

대전투데이



세종시의회 제61회 임시회 개회...27일까지 회기 진행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3일 오전 10시 제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세종시의회는 개회수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 인원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본회의 참석자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체온이상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본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했다. 또한 세종시의회의 제안으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근무 중인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장과 양원석 보건복지국장,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코로나19 대응에 민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0년 03월 24일 02면 (정치)

(15.0*9.8)cm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2020년 2분기 세종시의회 회기 안내

2020 0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0 0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0 07 JULY

		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62회 정례회 (35일간)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 5.5 (화) 어린이날
5.25 (월) ~ 5.28 (목) 을지태극훈련 4일간

● 제63회 임시회 (2일간)

- 제3대 후반기 원구성

* 6.6 (목) 현충일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부서 의사기록담당 300-7272) ○ 본회의 날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중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세중의회소식>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내 내외

보내실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담당자 박천국)

• 전 화 | 044. 300. 7248 • 팩 스 | 044. 300. 7219 • 이메일 | havnpark@korea.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2020 통권 제25호

세중의회 소식

발행처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홍보기획담당)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화 | 044-300-7000
홈페이지 | <http://council.sejong.go.kr>

1. 지난해(24호) 56p에 실린 생활법령 중 내용과 무관한 삽화가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삽화는 내용과 관계 없음'으로 바로 잡습니다.
2. 지난해(24호) 58p에 실린 생활법령 중 마지막 단락 '따라서~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까지 내용이 주제와 관련 없이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단락은 내용과 관계 없음'으로 바로 잡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침

